

물론, 이후 계속적으로 범죄피해자는 억압하고 범죄인은 고무하는 상황 아래에서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반인권범죄인의 수사과 공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효'에 비하여 훨씬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1996.2.16, 96헌가 2, 96헌바 7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의 합헌의견)]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동의한다. 예컨대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소급입법처럼 범죄자 개인의 신뢰보호요청 보다 일반인의 정의감정 만족 내지 인권이익 실현 등 공익상의 요청이 현저히 중대한 경우 등이다.

비교법적인 예를 보자면, 먼저 미국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 인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근래까지의 다수입장이었으나, 최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999년 'People v. Frazer 판결'[982 P.2d 180 (Cal. 1999), cert. denied, 120 S.Ct. 1960 (2000)]에서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여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로는 1946년 5월 29일 독일 헤센 주가 제정한 '나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Gesetz zur Ahndung nationalsozialischer Straftaten), 1993년 3월 26일 제정된 '독일통일사회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정지법'(Gesetz ueber das Ruhen der Verjaehrung bei SED-Unrechtstaten)이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1968년 유엔총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을 채택하였고,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도 1974년 동일한 내용을 갖는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Europea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또한 상술한 1998년 '로마회의' 규정 제29조도 공소시효배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선언문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

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불처벌로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기소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법치주의는 확고한 기초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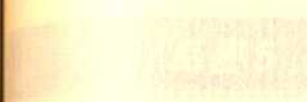
IV. 맺음말

'민주화' 이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실상이 밝혀졌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 범죄인들이 처벌되지 않는 현상 앞에서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모든 법이론적 논의를 떠나서 공소시효제도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현실 하에서는 진정한 '과거청산'은 불가능하며 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부당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대 민주주의 형법의 대원칙이지만, 이 원칙은 헌법의 기본이념과 시민의 기본권이 다름 아닌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자신의 예외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당초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발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거꾸로 인권유린 범죄인들을 정당한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의 역류현상이 계속되어 법질서 자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정지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상의 주장은 조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사법연구』제17호 (2002)에 기초하고 있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관한 소견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관한 소견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관한 소견

토론5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관한 소견

조정찬 (법제처 법제관)

1. 공소시효 배제 입법 필요성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있어 가장 큰 의의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있어 가장 큰 의의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관한 소견

조 정 찬
(법제처 법제관)

1. 공소시효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공소시효란 확정판결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인 바, 그 제도적 존재의의는 ①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 ②증거판단의 곤란을 방지하자는 것 ③실체법상으로도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약화된다는 것 ④피고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자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즉, 공소시효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려 하는 데에서 그 존재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공소시효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형법 제77조 이하에 규정된 형의 시효와 비교하여 보면, 전자는 확정판결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확정판결후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지만, 양자 모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로 공소권이 소멸하는 것이지만 시효가 완성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소를 선고할 것으로 되어 있어(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공소시효 완성에 의한 공소권의 소멸은 실질적으로 형벌권의 소멸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소시효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서는 이를 순수한 소송요건으로 파악하여 죄형법정주의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소송법설과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적 성격으로 파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실체법설. 그리고 양자의 성격 모두를 갖는다는 병합설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처럼 공소시효를 형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법설이 유력한 것 같다.

참 조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1996. 2. 16 96헌가 2, 96헌바 7, 97헌바 13(병합) 재판관 김용준·정정식·고중석·신창언의 의견].

여기에 의하면 원래 범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범인필벌」이 형사사법적인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아울러 공정한 재판에 의한 공정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의 일실 등으로 공정한 재판을 못하게 되는 것은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죄질에 따라 법에 규정된 일정기간동안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추를 금지시킨 것이 공소시효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소시효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인 이익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로 인하여 누리는 법적 이익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에 대한 피고인의 이익은 형사소추에 대한 국가의 이익, 즉 범인필벌의 실체적 정의의 요청과 필연적으로 충돌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두가지 이익을 상호조정함으로써 그 보호범위와 정도가 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확장 문제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인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의 불성실 또는 무능력으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지연됨으로써 피고인이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이념구현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는 그 자체가 부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시대마다 공소시효제도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다분히 입법정책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UN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시효부적용에 대한 협약」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보호막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데 인류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공소시효의 배제는 그 범위가 문제되는 것이고 어떤 법리적 재약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도 이미 1995년말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를 헌정질서파괴범죄라고 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과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의 중단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효정지사유도 공소의 제기와 국외도피 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논의의 대상이 되

어 왔다.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성안한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별법안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에서 공소시효는 배제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소시효정지사유를 추가로 규정한 것은 정책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겠다.

우선 시민단체안이 UN총회에서 채택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에 대한 협약」에서 정의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시킨 것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다만, 협약에의 가입에 앞서 국내법에 이를 수용한 것은 순서가 바뀐 느낌이 있다.

한나라당안의 내란 및 외환의 죄는 종전의 특별법에 있던 사항을 형사소송법에 편입시킨 것으로서 새삼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고문·상해·살인범죄와 전쟁범죄 및 테러행위로 민간인을 살상한 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한 증거인멸·범인도피·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포함시킨 것은 각안에 따라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권력의 남용을 겪었던 우리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나라당안의 미성년자 약취·유괴살인범죄는 앞의 것들과 그 계를 달리하는 것이지만 공감을 살만한 유형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공소시효배제대상범죄의 선정은 시대상을 반영한 부분도 포함되고 국제적 공조라든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이지만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의 정지도 국가기관의 권력남용과 은폐 및 비호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의 어두운 면을 상기시키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3. 개정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시민단체가 제안한 특별법안은 동법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의 사례에 따른 것이며, 한나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적용례를 규정하였다.

여기에 관하여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례에서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으로 나누어 상세히 실시하고 있는데 재판관들 사이에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까지 소급시키는 진정소급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제헌헌법의 경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제101조)라는 부칙 규정을 두었고 제4장 헌법개정은 부정선거 및 반민주행위자 소급처벌을 위한 개헌이었으며, 그후에도 소위 정치활동정화법 등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하는 부칙 규정을 둔 일이 있는데, 실제법상 구성요건의 소급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내지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같은 헌법 부칙에서 특칙을 둔 경우에만 소급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공소시효의 배제 또는 정지규정의 소급은 그것이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소송법설에서 보는 것처럼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형벌권의 소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 만큼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한나라당안은 그와 같은 점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4. 제정형식에 관한 문제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입법형식을 특례법의 제정으로 할 것인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할 것인지를 문제에 관하여는 입법체계상 원론적 설명으로 같음한다.

특례법의 남발은 입법체계를 번잡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법률적용상 차등을 두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례법을 제정하는 경우로서는 ①일반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법률과는 그 목적을 다소 달리하여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일반적 법률에 대한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한 경우 ②일반인의 생활과는 관계가 있으나 법조문수가 몇 개조에 그치므로 그것을 일반적 법률에 편입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및 반대로 조문수가 많아 일반적 법률에 규정한다면 일반적 법률과 부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률의 적용대상을 일반인 가운데 한정된 일부의 자에게만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④제정하려는 법률이 어떤 특정한 범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어느 범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⑤어떤 사안을 단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응급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⑥국가중요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이에 상호 업무협조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한국법제연구원, 특례법의 현황과 정비방향, 1992. p.12)

5. 기타문제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안 모두에서는 「국가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기관이란 공무원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내지 정지사유 확대에 관한 논의에 덧붙

여 오늘날 정보의 관리·보관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있음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전반적으로 연장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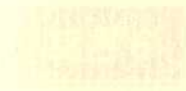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5. 기타문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토론6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문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문

하 태 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고 최 중길 교수의 의문사사건과 수지 김 피살사건의 실체가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조작과 은폐의 산물임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두 번의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다. 개인의 생명이 국가와 정권유지라는 미명 하에 비참하게 유린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 비열한 조작과 은폐에 관여한 국가공무원들이 공소시효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한 실체진실발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법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자 처벌의 장애물인가 아니면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보루인가. 물론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인 불법은 그대로지만 증거가 멸실 되어 진실발견이 심히 어렵게 되고,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법질서와 법적 평화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회복되어 범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형벌의 목적도 감소되었다는데 있다. 또한 범인에게도 처벌의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진실발견이 심히 어려운 상태에서 범인을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한다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제도이다.

문제는 이 제도의 취지가 예외 없이 모든 범죄행위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공소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충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입법이나 법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가이다.

II.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된다. 실체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법 중에서도 범죄의 가벌성에 관계되는 규정의 경우에는(예컨대 공소시효제도처럼 실체법적 및 소송법적 성격이 혼재된 법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형사소송법규정의 내용이나 성질상 실체법적인 형법과 동일시될 수 있는 정도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또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성은 소추조건 등 소송법규정이 변경되더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련된 원칙이고 가벌성과는 관계없이 소추가능성에 관련된 공소시효의 규정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따라서 행위당시에 친고죄였던 범죄를 비친고죄하여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소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위 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공소시효는 소추조건일 뿐이며 범죄와 형벌은 이미 행위시에 법률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이익과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 교량하여 후자가 우월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만료된 공소시효가 재개되도록 개정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취지인 시민의 규범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판결의 반대의견처럼,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형

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제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III.

그러나 이와 같은 소급효금지의 이념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진실은폐와 조작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제도적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우선 ① 다른 범죄는 범죄발생여부가 수사기관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잡히지 않거나 진실규명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면서 공소시효가 진행됨에 반해,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경우에는 애당초부터 불법과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진실규명의 의지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② 범죄자가 공소시효의 경과로 인한 처벌불가능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점과 ③ 공소시효기간에 당한 통상적인 범죄자의 고통과는 달리 권력적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함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고통도 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공소시효에 대한 신뢰이익을 국가권력을 악용한 범법자에게도 보장한다면 이는 현저히 정의에 반하게 된다. 그들에게 불법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다면 파괴된 법과 질서는 다시 세워지지 못하게 되며, 다른 범죄와는 달리 그 불법이 밝혀진 때 비로소 법적 평화는 깨지게 된다. 나아가 국가권력의 진실은폐나 조작 등 불법이 자행되고도 공소시효의 경과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사건의 조작은 폐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을 제정하는 길뿐이다.

IV.

공소시효의 배제와 정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공소제기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기간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여기에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이나 군수사기관등이 포함될 수 있다)에 의하여 사건이 조작 또는 은폐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하여 조작 또는 은폐사실이 밝혀진 때에 비로소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예외규정을 두자는 견해나 그 적용대상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제·개정의 목적이나 이유가 동일하다. 그렇다면 특별법의 상징적 의미나 법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별법에는 공소시효의 배제 대상(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범죄)과 공소시효의 정지대상(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은폐·조작행위)을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그 적용범위도 특별법 시행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적용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생명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에 관한 것에 한하여야 한다.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 신체침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제도의 취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V.

물론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를 사후에 연장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아직 진행 중인 아니면 이미 만료되었던 간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원칙이기 때문이다. 사후입법으로 특정범죄나 특정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포함한 법치국가이념의 중대한 훼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을 이용한 의도적인 증거조작이나 은폐사건의 경우처럼 범인의 공소시효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이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현저히 적을 때에는 공소시효의 연장입법은 법치국가이념에 부합한다고 본다. 공소시효가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질적 정의의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개인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한 범법자에게 공소시효의 기대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법치국가이념에 합당한 조치이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다른 범죄자들이 공소시효의 경과로 처벌되지 않은 것과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되지 않는다면 불평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비열한 권력적 불법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실체진실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유린된 인권과 파괴된 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시효비적용협약

부록

- 이 회의의 당사국들은
- 전쟁범죄반의 인도 및 처벌에 관한 1948년 12월 10일 제3091호 결의안 및 1947년 10월 26일 유엔 총회 결의(1947), 유엔배르톨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및 제1차 세계 대전 중 국제법 위반행위 확인하는 1948년 12월 12일 결의 1948, 유엔배르톨로 제2차 세계 대전 중 국제법 위반행위 확인하는 1948년 12월 12일 결의 1948D, 및 1948년 12월 12일 결의 1948E
- 자료 1**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시효비적용협약
- 자료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효연장법: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354.6조
- 자료 3** 국제형사재판소규정중 공소시효배제 대상범죄
- 자료 4**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 자료 5**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자료 6**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 자료 7**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 자료 8** 형법
- 자료 9** 군형법
- 자료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자료 1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시효비적용협약¹⁾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전쟁범죄인의 인도 및 처벌에 관한 1946년 2월 13일의 결의 3(I) 및 1947년 10월 31일 결의 170(II),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의하여 승인된 국제법 원칙을 확인하는 1946년 12월 12일 결의 95(I) 및 토착민의 경제적 및 정치적 권리의 침해와 아파르트헤이드 정책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1966년 12월 12일 결의 2184(XX) 및 1966년 12월 16일 결의 2202(XXI)를 상기하고,

전쟁범죄자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의 처벌에 관한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1965년 7월 28일 결의 1074D(XXXIX) 및 1966년 8월 5일 결의 1158(XLI)를 상기하고,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기소와 처벌에 관련된 엄숙한 선언, 문서 또는 협약의 어떤 것도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주의하고,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상기하고,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효과적 처벌은 그러한 범죄의 방지, 인

1)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G.A. res. 2391 (XXIII), annex, 23 U.N. GAOR Supp. (No. 18) at 40, U.N. Doc. A/7218 (1968). 1970.11.11. 10개국의 비준으로 발효. 2001.10.9. 현재 45개국이 당사국. Afghanistan, Albania, Armenia, Azerbaijan, Belarus,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ameroon, Croatia, Cuba,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stonia, Gambia, Georgia, Ghana, Guinea, Hungary, India, Kenya, Kuwait,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ibyan Arab Jamahiriya, Lithuania, Mexico, Mongolia, Nicaragua, Nigeria,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lovakia, Sloven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nisia, Ukraine, Uruguay, Viet Nam, Yemen, Yugoslavia.

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 신뢰의 증진, 인민들간의 협력증진 및 국제평화와 안전의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통상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관련 국내법 규칙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적용은 그것이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의 기소와 처벌을 방해하기 때문에 세계여론에 심각한 관심사중의 하나가 됨을 주의하고,

이 협약을 통하여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국제법적으로 확인하고 그 보편적 적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시의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발생일시에 관계없이 제정법상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a) 1945년 8월 8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규정되었고 국제연합 총회의 1946년 2월 13일의 결의 3(1) 및 12월 11일의 결의 95(1)에 의하여 확인된 전쟁범죄, 특히 전쟁희생자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제협약에 규정된 "중대한 위반행위"

(b) 전시이건 평시이건 발생한 1945년 8월 8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규정되고 국제연합 총회의 1946년 2월 13일 결의 3(1) 및 12월 11일 결의 및 95(1)의 결의로 확인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 무력공격 또는 점령 및 아파르트헤이드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인도적 행위에 의한 쫓아냄, 1948년 제노사이드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제노사이드 범죄행위. 다만 이러한 행위들이 그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국내법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러하다.

제2조

제1조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은 주동자로서 또

는 가담자로서 참여하거나, 직접 타인을 선동하여 상기 범죄를 발생케 하거나 또는 상기 범죄를 모의하는 국가 당국의 대표 및 사개인 및 그러한 범죄의 발생을 묵인하는 국가 당국의 대표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이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입법적으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일체의 필요한 국내적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제정법상의 시효 또는 기타 시효제도가 이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기소 및 처벌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효가 폐지되도록 필요한 입법적 또는 기타의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이 협약은 1969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 및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고자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초청을 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제6조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7조

이 협약은 제5조에 규정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가입서는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8조

1. 이 협약은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다음 날부터 9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는 이 협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다음날부터 9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9조

1.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의 통지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이 언제든지 협약의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그러한 요청에 관하여 만약 있다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5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 이 협약의 인증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제5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 통보하여야 한다.
 - (a)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이 협약의 서명 및 기탁된 비준서 및 가입서
 - (b) 제8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자
 - (c) 제9조에 의하여 접수된 통보

제11조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은 1968년 11월 26일 작성되었으며, 이의 증거로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효연장법: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354.6조²⁾

제354.6조

(a) 이 조에서

- (1)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란 나찌 정권, 그 동맹과 그 동조자들에 의하여 또는 나찌 통치 또는 그 동맹 및 동조자들에 의하거나 그 통제하에 점령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한 기업에 의하여 1929년부터 1945년 사이의 어느 기간중에 보수없이 노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용소 또는 유태인강제수용소로부터 차출되거나 또는 수용소나 유태인강제수용소로 억류된 사람을 말한다.
- (2)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란 나찌 정권, 그 동맹국들 또는 동조자들에 의하여 정복된 민간인이나 또는 나찌 정권, 그 동맹국들 또는 동조자들의 포로로서 나찌 정권, 그 동맹과 그 동조자들에 의하여 또는 나찌 정권 또는 그 동맹 및 동조자들에 의하거나 그 통제하에 점령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한 기업에 의하여 1929년부터 1945년 사이의 어느 기간 중에 보수없이 노동이 강제되었던 사람을 말한다.
- (3) "보상"은 수행된 노동과 관련하여 개인이 지급받았어야 했을 임금과 이익 및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현재 가치는 전시의 감액 또는 전후 통화가치의 하락 없이 노동이 수행될 당시의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 그 서비스가 수행된 시점부터 완전 지급시까지 매년 복리의 이자를 더한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2) 2000.7. 발효. 이 법률의 제정으로 미국내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2차대전중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여러 소송을 진행중.

(b)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상속인,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또는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로서 수행한 노동에 대하여, 직접 또는 자회사 또는 제휴회사를 통하건 그 이익을 얻은 실체 또는 그 승계자를 상대로 보상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이 주의 상급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동법원은 완불 또는 해결시까지 동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c) 이 조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적용가능한 제소기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³⁾중 공소시효배제 대상범죄

제6조 제노사이드

이 規程의 목적상 "제노사이드"는 국민,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파멸시킬 의도로 행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a)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 (b)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 (c)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
- (d) 집단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 (e)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

제7조 인도에 반하는 범죄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민간주민에 대한 공격임을 알고서 민간주민을 직접 목표로 하는 광범위하거나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a) 살인

3)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7.17. 채택, 2002.7.1. 발효.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를 대상범죄로 규정함. 현재 77개국 이 당사국. Andorra, Antigua and Barbuda, Arh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Bosnia and Hel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Cambodia,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olombia, Costa Rica, Croatia, Cypru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ominica,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ordan, Latvia, Lesotho, Liechtenstein, Luxembourg, Mali, Marshall Islands, Mauritius, Mongolia, Namibia, Nauru,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 Nigeria, Norway, Panama, Paraguay, Peru, Poland, Portugal, Romania, Samoa, San Marino, Senegal, Sierra Leone, Slovakia,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ajikist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rinidad and Tobago, Uganda,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ruguay, Venezuela, Yugoslavia.

- (b) 절멸
 - (c) 노예화
 - (d)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동
 - (e) 국제법의 근본 규칙에 위반되는 감금 또는 신체의 자유의 심각한 박탈
 - (f) 고문
 - (g)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러한 것과 대등한 중요성을 갖는 다른 형태의 성폭력
 - (h)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이 항에 언급된 행위 또는 법원의 관할권내의 범죄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근거에서 특정 집단 또는 집합체에 대한 박해
 - (i) 납치
 - (j) 아파트헤이트 범죄
 - (k) 신체 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큰 고통을 주거나 심각한 손상을 고의로 야기하는 성격을 갖는 기타 비인간적 행위
2.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 (a) "민간주민을 직접 목표로 하는 공격"은 그러한 공격을 감행하는 국가 또는 조직의 정책에 따라 또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주민을 상대로 제1항에 언급된 행위를 다수 반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b) "절멸"은 생존 조건의 고의적 침해, 특히 인구의 일부의 파괴를 가져올 정도로 음식 및 의료에 대한 접근을 박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c) "노예화"는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가된 권한의 행사를 말하며 사람,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밀거래 과정에서의 그러한 권한의 행사도 포함한다.
 - (d)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동"은 주민들이 국제법상 허용되는 사유 없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구축하거나 또는 기타 강제 행동으로써 관계인들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 (e) "고문"은 구금상태에 있거나 또는 통제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

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인 제재조치로부터 야기되고 이에 고유한 또는 이에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f) "강제임신"은 인구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국제법상 기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수행할 의도를 갖고 강제로 여성을 임신하게 하는 불법적 감금을 말한다. 이 정의는 결코 임신과 관련된 국내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g) "박해"는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을 이유로 국제법에 반하는 기본적 권리의 고의적인 심각한 박탈을 말한다.

(h) "어파트헤이드" 범죄는 특정 인종집단이 다른 인종집단에 대해 체계적인 억압과 지배의 제도화된 체제의 맥락에서 행해지고 또한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행해지는 제1항에 언급한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비인간적 행위들을 말한다.

(i) "사람의 납치"는 상당 기간 법의 보호에서 배제시킬 의도를 갖고 자유의 박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그러한 사람의 운명 또는 소재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고, 국가 또는 정치조직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에 의하여 사람을 체포, 구금 또는 유괴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규정의 목적상 "성"(gender)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양성, 남성 및 여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성"이라는 용어는 위와 다른 어떤 의미도 가르키지 않는다.

제8조 전쟁범죄

1. 법원은 전쟁범죄 특히 계획 또는 정책의 일부로서 행해지거나 또는 대규모적인 전쟁범죄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범죄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 이 규정의 목적상 "전쟁범죄"는 다음을 말한다.

(a)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제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 즉 관련 제네바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다음의 행위

- (i) 고의적 살인
- (ii) 생물학 실험을 포함한 고문 또는 비인간적 처우
- (iii) 신체 또는 건강에 고의로 심대한 고통 또는 심각한 손상을 야기

하는 행위

(iv)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그리고 이

유없이 행해지는 재산의 광대한 파괴 및 수용

(v) 전쟁포로 또는 기타 보호받는 사람을 적국의 군대에 강제로 복무

시키는 행위

(vi) 전쟁포로 또는 기타 보호받는 사람에게서 공정한 정규재판을 받

을 권리를 고의로 박탈하는 행위

(vii) 불법적인 추방·이전 또는 불법적 감금

(viii) 인질행위

(b) 국제법상 확립된 범주내의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 및 관습에

대한 기타의 심각한 위반행위, 즉 다음의 행위

(i) 적성이 있는 대상을 직접 목표로 하지 않고 민간 주민 또는 민간

개인을 직접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

(ii) 군사목표가 되지 않는 민간 목표를 고의로 직접 공격하는 행위

(iii) 인도적 지원행위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평화유지임무와 관

련된 인원, 시설, 재료, 부대 또는 운반수단을 고의로 직접 공격

하는 행위. 다만, 무력충돌의 국제법상 민간인 또는 민간 목표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iv) 그러한 공격이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전반적인 군사적

인점에 비해 명백히 과도하여, 부수적으로 생명의 손실 또는 민

간인에 대한 상해 또는 민간 목적물에 대한 손상을 야기시키거나

또는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야기시

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공격을 개시하는 것.

(v) 무방수 되고 있고 군사목표물이 아닌 도시, 촌락, 주거지 또는 빌

딩을 어떤 수단에 의하든지 공격하거나 폭격하는 것

(vi) 무기를 버렸거나 또는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는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것

(vii) 휴전기, 적 또는 국제연합의 깃발, 군장 및 군복, 그리고 제네바

제협약의 식별 기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망 또는 심각한 인적

손상을 결과하게 만드는 행위

- (viii) 점령국이 자국 민간주민의 일부를 직접 간접으로 피점령지역으로 이송하거나 피점령지역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지역 내부 또는 외부로 추방 또는 이송하는 것
- (ix) 군용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종교, 교육, 예술, 과학 또는 자선 목적에 사용하는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자와 부상자가 수용된 병원 및 장소를 고의로 직접 공격하는 것
- (x) 상대방 권력내에 있는 사람을 의학상, 치의학상 또는 병원 치료상 결코 정당화되지도 않고 그의 이익을 위하여 실행되지도 않는 신체의 절단 또는 의학상·과학상의 실험대상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
- (xi) 적국 또는 적군에 속하는 개인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것
- (xii) 투항자를 구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
- (xiii) 전쟁 필요성에 의하여 긴박하게 요구되지 않는에도 적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몰수하는 것
- (xiv) 적대국 국민의 권리 및 행동을 법원에서 폐지하거나, 정지하거나 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 (xv) 적대국 국민을 강제하여 그 본국을 직접 상대로 하는 작전에 참여시키거나 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 (xvi) 공격으로 함락되었더라도 그 도시 또는 장소를 약탈하는 것
- (xvii) 독 또는 독이 든 무기를 사용하는 것
- (xviii) 독, 독가스 또는 기타가스 그리고 모든 유사한 액체, 재료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
- (xix) 견고한 껍데기로 총알을 완전히 감싸지 않는 총탄이나 신체를 절개하여 관통하는 총탄과 같이 사람의 신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편평해지는 총탄을 사용하는 것
- (xx) 과도한 피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시키는 성질을 갖거나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법에 위반하여 본질적으로 무차별한 무기, 투사

- 물, 재료 또는 전쟁방법을 사용하는 것. 다만 그러한 무기, 투사물, 재료 및 전쟁방법은 제121조 및 제123조에 규정된 관련 조항에 따른 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금지의 대상이 되고 또한 이 規程 부속서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한다.
 - (xxi)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 (xxii) 제7조에 규정된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제네바 제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형태의 성적 폭력을 행하는 것
 - (xxiii) 민간인 또는 기타 보호받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일정한 지점, 지역 또는 군대를 군사작전에서 면하게 활용하는 행위
 - (xxiv) 국제법에 일치되게 제네바 제협약의 엠블렘을 사용하는 건물, 재료, 의료시설 및 운송수단을 고의로 직접 공격하는 것.
 - (xxv) 제네바 제협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구호물자의 공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간인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을 박탈함으로써 전쟁 수단으로서 민간인의 기아를 이용하는 것
 - (xxvi)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로 징병하거나 모병하거나 이들을 적극적으로 적대행위에 가담케 하는 것
- (c) 국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무력충돌에 있어서는,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4개 협약의 공통 3조의 중대한 위반, 즉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
- (i)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
 - (ii)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 (iii) 인질로 잡는 것
 - (iv) 불가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고,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사전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 (d) 제2항 (c)는 국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무력충돌에 적용하고 따라서 폭

동, 고립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기타 유사한 성격의 행위 등 국내
소요·긴장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 국제법상 확립된 체계내에서의 국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무력충돌에 적
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다음의 행위와 같은 기타의 중대한 위반행위

(i) 민간 주민 또는 직접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민간인 개인을
고의로 직접 공격하는 것

(ii) 국제법에 일치되게 제네바 제협약의 엠블렘을 사용하는 건물, 재
료, 의료시설 및 운송수단을 고의로 직접 공격하는 것.

(iii) 인도적 지원행위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평화유지임무와 관
련된 인원, 시설, 재료, 부대 또는 운반수단을 고의로 직접 공격
하는 행위. 다만, 무력충돌의 국제법상 민간인 또는 민간 목표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iv) 군용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종교, 교육, 예술, 과학 또는 자선
목적에 사용하는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자와 부상자가 수용된
병원 및 장소를 고의로 직접 공격하는 것

(v) 공격으로 함락되었다고 그 도시 또는 장소를 약탈하는 것

(vi) 제7조에 규정된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제네바제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형태의 성적
폭력을 행하는 것

(vii)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로 징병하거나 모병하거나 이들을 적극
적으로 적대행위에 가담케 하는 것

(viii) 관계 민간인의 안전 또는 긴급한 군사적 이유가 없는데도 충돌과
관련한 이유로 민간 주민의 소개를 명하는 것

(ix) 전투원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하는 것

(x) 투항자를 구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

(xi) 충돌의 상대방 권력내에 있는 사람을 의학상, 치의학상 또는 병
원 치료상 결코 정당화되지도 않고 그의 이익을 위하여 실행되지
도 않는 신체의 절단 또는 의학상·과학상의 실험대상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

(xii) 충돌의 필요성에 의하여 긴박하게 요구되지 않는데도 상대방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몰수하는 것

(f) 제2항 (e)는 국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무력 충돌에 적용하며 따라서 폭
동, 고립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기타 유사한 성격의 행위 등 국내
소요·긴장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군과 조직적인 무장
집단간 또는 조직적인 무장 집단 간의 장기적인 무력충돌이 존재할 때
그 국가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에 적용한다.

3. 제2항 (c) 및 (d)의 어느 규정도 정부가 그 국가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
확립하거나 또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그 국가의 통합성과 영토적
완전성을 방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

[제정 1995.12.21 법률 제5028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한다.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028호, 1995.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5.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 1995.12.21 법률 제5029호 법무부]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①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내려야 함.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증거가 멸실·산일(散逸)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게 되고, 또한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등임. 그러나 국제법상 인정되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범해진 살인·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범죄, 또는 이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방해한 국가공권력의 범죄의 경우도 공소시효의 혜택을 받는 것은 공소시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범죄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의 증거조작 및 사실발견 은폐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기간 동안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이 사회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의 특칙을 설정하려는 것임.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은폐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

효를 배제 또는 정지함으로써 사회정의와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서 정의된 반인도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국가기관이 직무수행중 정당한사유 없이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정지) 국가기관이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 등을 범한 경우 그 증거조작·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을 때부터 그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 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 2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 3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증거조작·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을 때부터 그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2
----------	------

발의연월일 : 2002. 5. 24

발 의 자 : 이주영 · 김덕규 · 김문수
 김원웅 · 김정숙 · 김홍신
 남경필 · 맹형규 · 박재욱
 박희태 · 안영근 · 안상수
 오세훈 · 윤경식 · 이운성
 김기배 · 장성원 · 정병국
 정재문 · 최병국 · 허태열
 현경대 · 현승일 · 황우여
 의원(24인)

제안이유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제도는 현재의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점과 시일의 경과에 따른 증거의 일실로 공소유지에 난점이 있다는 실무상의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나, 전쟁유발행위, 고문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여 살상하는 행위, 민간인 학살행위 등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공소시효제도의 예외적인 것으로 하여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또한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사건이 은폐·조작됨으로써 정상적인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은폐·조작된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적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게 하고자 함.

주요골자

家察志五文中志信福軍匪

- 가.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국가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49조제2항)
- 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그 체류기간과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사실발견의 은폐행위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의 경우 그 증거조작, 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는 때부터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진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됨(안 제253조제3항).

유[어안]

소공 공소시효... 유[어안]... 공소시효 정지됨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刑事訴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犯罪行爲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公訴時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刑法 제87조 내지 제103조의 內亂 및 外患의 罪
2. 刑法 제125조와 제287조의 犯罪行爲로 사람을 殺傷한 行爲
3. 戰爭犯罪 및 테러행위로 民間人을 殺傷한 行爲
4. 國家機關이 사실발견을 隱蔽하기 위하여 행한 證據湮滅, 犯人逃避, 職權濫用, 職務遺棄, 僞證, 公務執行妨害行爲

제2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犯人이 刑事處分을 면할 목적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의 그 체류기간과 國家機關의 故意에 의한 證據造作이나 事實發見의 隱蔽行爲로 인하여 公訴提起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의 경우 그 證據造作, 事實發見 隱蔽行爲가 있는 때부터 確定判決에 의하여 밝혀진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한 公訴時效는 停止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49조(公訴時效의 期間) ① (생략) <신설></p> <p>② (생략)</p> <p>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①·② (생략)</p> <p>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p>	<p>제249조(公訴時效의 期間)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犯罪行爲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公訴時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刑法 제87조 내지 제103조의 內亂 및 外患의 罪 2. 刑法 제125조와 제287조의 犯罪行爲로 사람을 殺傷한 行爲 3. 戰爭犯罪 및 테러행위로 民間人을 殺傷한 行爲 4. 國家機關이 事實發見을 隱蔽하기 위하여 행한 證據湮滅, 犯人逃避, 職權濫用, 職務遺棄, 僞證, 公務執行妨害 行爲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犯人이 刑事處分을 면할 목적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의 그 체류기간과 國家機關의 故意에 의한 證據造作이나 事實發見의 隱蔽行爲로 인하여 公訴提起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의 경우 그 證據造作, 事實發見 隱蔽行爲가 있을 때부터 確定判決에 의하여 밝혀진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한 公訴時效는 停止된다.</p>

자료 8

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법무부]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부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

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형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형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국방부]

제62조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3.12.16>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4호 법무부]

제15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